#### <u>행정명령(EXECUTIVE ORDER)</u>

#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THE OLMSTEAD PLAN) 수립 및 구현 고문단(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ABINET) 설립

- 이에 따라, Olmstead v. L.C., 527 U.S. 581(1999)를 통해 열린 미국 고등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는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는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설에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Olmstead 법원은 불필요한 관례적 배치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가족 관계, 사회적접촉, 취업 선택권, 경제적 독립성, 교육 향상 등의 기회를 심각하게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인식했습니다.
- 이에 따라, 뉴욕주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절한 지원 시설을 갖춘 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뉴욕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서비스, 설정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가져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뉴욕주는 개인의 요구사항을 더욱 잘 해결하는 치료 시설의 이용을 가속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을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을 설립하는 일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뉴욕주는 뉴욕주 회계연도 2012-2013 행정 예산에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와 지원 주택을 위한 자금을 포함시켜 장애인을 위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뉴욕주 전체의 장애인 어린이와 성인을 위해 종합적인 사법 심사 위원회계획(Olmstead Plan)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이제** 저,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미국 헌법 및 뉴욕주 법령에 의해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음을 명령합니다:

## A. <u>정의</u>

여기에서 사용된대로,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뜻이 적용됩니다:

- 1. "주 기관 (State agency 또는 agency)"은 모든 주 대행기관, 관공부, 부서, 국,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뜻합니다.
- 2. "당국"이란 뉴욕주 법률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거나 존재하는 공공 기관 또는 공공 비영리 단체를 뜻하며, 주지사가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뉴욕주 민원실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특정 공공기관 또는 공공 비영리 협회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국제 당국 또는 공공 비영리 기관은 제외합니다.

### B.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Olmstead Plan) 수립 및 구현 고문단

- 1. 이에 따라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Olmstead Plan) 수립 및 구현 고문단("고문단")을 설립하여 주지사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 2. 이 고문단은 주지사의 보건 담당 부서기관/보건 개혁 책임자, 주지사 법률고문, 예산 책임자, 발달장애국장, 보건국장, 노동국장, 교통국장, 정신건강국장,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서비스국장, 어린이 및 가족 서비스국장, 주택 및 지역사회 개선 국장, 임시 및 장애 지원국장, 노령화 담당실 책임자, 요양 서비스및 장애인 옹호 담당 국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구성원은 주지사의 재량으로 고문단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 3. 주지사는 고문단 구성원 중에서 고문단의 회장을 지명합니다.
- 4. 고문단의 각 구성원은 자신을 대신하여 고문단에 참여할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고문단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회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C. 고문단과의 협력

- 1. 뉴욕주의 각 기관과 당국은 이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 시설의 사용을 포함하여 정보, 지원 및 협력을 고문단에게 제공하며 합니다.
- 2. 고문단의 업무 이행에 필요한 직원 지원은 기관 및 당국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그와 같은 당국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 D. 임무와 목적

- 1. 고문단은 뉴욕주를 위해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Olmstead Plan)("위원회")의 설립, 구현 및 조율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주지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한 권장을 함에 있어서 고문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의 잠정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 a. 사법 심사 위원회(*Olmstead*) 및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필수적인 준수 요건 파악.
  - b.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을 위해 통합된 설정과 통합된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장애인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절차.
  - c. 차별적 주거시설에서 주거용 주택으로의 전환 목표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측정 가능한 진척 상황, 장애인을 위한 채용 기회.
  - d. 성공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
  - e. 계획 이행을 위한 법규 및 규정 변화.
  - f. 특정 및 적절한 구현 기한을 포함하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주 기관 및 당국의 전략 조율.
  - g. 장애인을 위한 통합된 주거시설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이회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
  - h. 종합적이고 통일된 계획을 달성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방법.
  - i. 이 계획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법.

- 2.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Olmstead Plan) 수립 및 구현과 조율을 위한 권장사항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문단은 Most Integrated Setting Coordinating Council과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의 수립 및 구현과 관련된 기타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 3. 이 명령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문단은 장애인의 옹호자,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장애인 주택 및 채용을 담당하는 기관, 교육 기관 및 지역 정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에게 지침과 전문지식을 요청하며 일반인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 4. 이 고문단은 임무를 즉시 이행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고문단은 사법 심사 위원회 계획(Olmstead Plan)의 설립, 구현 및 조율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최종 보고서를 주지사에게 제출하며 이 때 고문단은 임무를 다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임무에서 해방됩니다. 그 날짜까지 이사회는 주지사나 주지사의 피지명인이 지시한 대로 이 명령의 목적을 이행함에 있어서 활동, 성과, 권장사항 및 조율에 대해 주지사에게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

주지사

주지사 비서